

최종학력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
(= 졸업증명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서식] <개정 2024. 5.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글)	이 순 신	(영문)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전화번호(본인 연락처 기입)	010-1111-2222
	주소(자격증 수령 가능 주소 입력)	서울 특별시 종로구 종로 31길 36		
	최종학력	학교명 ○○ 대학교 최종 졸업한 대학교명 기입(제출서류와 동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재) 기간 최종 졸업한 대학교 입학일자와 졸업일자 기입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최초과목 진입시기 기재) 입학 2007. 3. 2. ~ 졸업 2013. 2. 14.		
		학위등록번호 ○○ 대학교-001		
신청 내용	자격등급 및 요건	평생교육사 2 급 제 3 호		
	이수과목 및 경력	뒤쪽과 같음		

「평생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날짜 반드시 기입)
신청인 이 순 신 (서명 또는 인)
반드시 자필로 성명 기입 후 날짜, 서명 또는 도장 기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1부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부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6.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자격증 작성	→	발급대장 기재	→	교부(우편 교부 등)
신청인		신청인(이수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증을 신청하는 교육기관명 기재
- 본 교육원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기재

(뒤쪽)

이수과목 및 경력

이수기관명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이수과목

구분	과목	이수기관명	학점	성적
필수 과목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원	3	95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원	3	85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원	3	90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원	3	91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원	3	100
선택 과목				
소 계			15	461
선택 과목	여성교육개론	○○평생교육원	3	100
	성인학습및상담	△△평생교육원	3	88
	교수설계	△△평생교육원	3	85
	인적자원개발론	○○평생교육원	3	98
	직업·진로설계	○○평생교육원	3	97
소 계			15	468
합계			30	92.9

5과목 성적 합계

과목, 이수기관명 및 성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10 과목 성적 합계 평균
ex) 461+468 = 929 / 평균 : 92.9

경력

(구법 신청자 중 해당자만 기재)

기관명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수	비고
xxx 평생교육원	~팀	2021.1.1.~2022.1.1	12개월	
		~		
		~		
		~		
		~		

부록 1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 자격요건 작성 시 참고사항

1) [개정법] 대상자

- 2급 2호 : 학위취득 과정 중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급 3호 : 기 학위취득자가 관련과목을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3급 1호 : 학위취득 과정 중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3급 2호 : 기 학위취득자가 관련과목을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구법] 대상자

- 2급 2호 : 대학 재학 중 관련과목을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2급 3호 : 학사 학위취득자가 관련과목을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2급 4호 : 전문대학 재학 중 관련과목을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3급 1호 : 전문대학 재학 중 관련과목을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부록 2

평생교육 관련과목

가. 평생교육 관련과목(개정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2008.2.18 전부개정]

구분	과목명	
필수(5)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21)	실천영역(8)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방법영역(13)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나. 평생교육 관련과목(구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2000.3.31 제정]

구분	종 류	
가. 필수과목	과목 I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중 1과목
	과목 II	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학, 사회교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행정론,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교육법규론, 성인·청소년지도, 사회교육통계학, 평생교육론,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사회문제론, 사회학개론, 사회심리학, 사회사업론, 산업심리학, 사회복지론, 청년심리학, 사회조사방법, 성인심리학, 산업사회학, 노인심리학, 농촌사회학, 교육심리학, 도시사회학, 상담심리학, 사회정책, 아동심리학, 지역사회개발론, 교육사회학, 도서관학, 박물관학, 여성학, 노인학, 산업교육론, 직업윤리, 인력개발론, 산업교육과정론, 직업기술교육, 조직이론, 직업교육방법, 레크리에이션지도,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나. 선택과목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참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정, 2000.3.31)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1 가목(과목 I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2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2002년 2월 말일 현재 별표 1 가목 중 과목 II에 해당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